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66 발의연월일: 2025. 2. 3.

발 의 자:임미애·복기왕·박은정

송옥주·임오경·최기상

김용만 • 임호선 • 김용민

윤종오 • 이원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를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내가격 안정 및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나 부렁으로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늘리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렇게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농가는 생존권 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율의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거나 저율 혹은 무관세의 할당 관세 품목 및 물량을 확대할 경우 주무부장관이 필요성 등에 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련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8조제 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번호 · 품명 · 규격 · 용도 및 대체물품
-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 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 6.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 · 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 7.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세 부과를 요청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

- 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 부과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거나 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의 제목 중 "수정"을 "수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정부는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허된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수 있다.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 2. 양허할 때와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때의 여건변화내용
- 3. 확대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산출의 실증적 근거

- 4. 시장접근물량 확대가 해당 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 5.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수급실적 및 계획
- 6.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연도별·주요수입 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과 그 전망
- 7.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연도별 국내도매 가격 및 국내생산실적과 그 전망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 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 ⑦ 주무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 청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 다.
- ⑧ 제4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 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관세 및 시장접근물량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1조 및 제78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할당관세)	1.2	(생	제71조(할당관세)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신 설></u>			③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
			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
			과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번호ㆍ
			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
			<u> </u>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
			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
			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
			<u>서 및 용도</u>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
			의 수급실적 및 계획
			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
			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
			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인하
			이유 및 그 적용기간

<신 설>

<신 설>

<신 설>

③ • ④ (생 략)

- 7. 제1항 후단에 따라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관세 부과를 요 청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 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 우 주무부장관 또는 이해관계 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해관계 인이 제1항에 따른 관세 부과 를 요청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를 주무부장관에게 알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야 한다.
- ⑥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거나 제5 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부터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 료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
- <u>⑦·⑧</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u>수정</u>) ① 제78조(양허의 철회 및 <u>수정</u> 등)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정부는 자연재해・병충해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와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여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양해된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수있다.
- ⑤ 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를 요청하 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 1.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품명·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 2. 양허할 때와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할 때의 여건변화내용
- 3. 확대하여야 할 물량 및 물량

 산출의 실증적 근거
- 4. 시장접근물량 확대가 해당

<신 설>

<신 <u>설></u>

<u><신</u>설>

 물품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

 5.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수급실적 및 계

 획

- 6.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연도별· 주요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 입실적과 그 전망
- 7. 해당 연도와 그 전후 3년간 해당 물품의 월별·연도별 국 내도매가격 및 국내생산실적 과 그 전망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대 요청을 받은 경우 그 관계 자료 등을 검토하고 관계 자료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주무부장관은 제4항 및 제5 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의 확 대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⑧ 제4항을 적용받을 물품 및수량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한다.